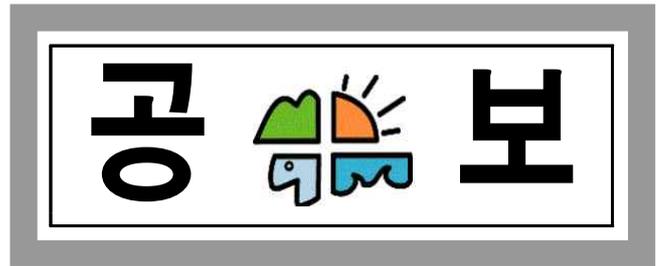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05호 2023년 12월 01일(금)

공 고

- 속초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2
- 「소하천(외옹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 9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성과 평가를 위한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원을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속 초 시 장

1. 명 칭 : 속초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2. 모집인원 : 4명
3. 모집분야 : 환경분야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5. 기 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성과 평가
6. 응모자격
 -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속초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뜻이 있는 자

7. 위원 선정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 전문성,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

8.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30. ~ 2023. 12. 15. 18:00까지 / 16일간
- 접수장소 :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 자원재생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 자원재생팀 우) 24826
 - 이메일 : abdns@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33-639-1643) 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유효함
- 제출서류
 - 속초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응모지원서[서식 1] 1부.
 - 서약서[서식 2] 1부.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3] 1부.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9. 기타사항

- 지원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학력, 주요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원회 관련자료(명단, 회의록 등)는 우리시 지침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 자원재생팀(☎033-639-1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야 합니다.
2. E-Mail 제출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원서 작성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4.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② “주소” 현재 거주지 또는 근무처 중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기재
 - ③ “연락처” 는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기재
 - ④ “학력” 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 ⑤ “경력” 은 당해분야 실무경력을 기재하며, 타 지자체 위원회 위원일 경우 반드시 기재
 - ⑥ “자격사항” 은 당해분야 취득자격을 정확히 기재(사본 첨부 제출)
 - ⑦ “논문, 수상 등” 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

「소하천(외용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소하천(외용치천)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소하천(외용치천) 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속초시 대포동29번지 일원(대포동 소류지~농공단지 사거리)
- 다. 시행자: 속초시장
- 라. 사업기간: 2023. 8. 4.~2024. 8. 2.
- 마. 사업내용: 외용치천 호안 및 교량 시설물 등 정비
 - 하천정비 L=1.035km, 소교량 3개소

2.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가. 열람 기간: 2023. 12. 1.~2023. 12. 15. (14일간)
- 나. 열람 장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 균형발전팀

- 속초시청 홈페이지(www.sokcho.go.kr)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

※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공고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가. 붙임 조서 별도 기재

나. 보상 대상은 추후 측량 및 계획 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고에 포함된 토지는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 물건 및 지장물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과 균형발전팀(☎033-639-253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